

안전보건관리규정

2023. 06. 01

제 1 장 | 총 칙 |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정국토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와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에 정하는 책임과 의무사항은 회사와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파견직 근로자 포함)
2. 이 규정에서 말하는 작업장은 연구소 및 사무실, 공사현장 등을 모두 포함한다.
3. 회사의 도급 사업장에도 본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 안전 · 보건 관리 |

제 3 조 [안전 · 보건관리 조직]

1.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각 호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 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대표이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가호의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안전 · 보건 교육]

1.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교육의 종류와 대상과 시기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한다.
 -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③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④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⑥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⑦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회사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직원에게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3. 회사는 관련 교육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회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조 [안전조치]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②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③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2. 회사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 장 | 공사현장 관리 |

제 6 조 [공사현장 안전관리]

1.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안전 · 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② 기계 · 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③ 유해 · 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 ④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 ⑤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 ⑥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 ⑦ 안전표지 · 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회사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직원에게 안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 7 조 [공사현장 보건관리]

1.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이행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①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 ②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 ③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④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⑤ 보건표지 · 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회사의 보건 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 [근로자 건강진단]

1. 근로자는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직업성 질환 발생위험에 직면하게 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
2. 근로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①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② 특수건강진단
 - 회사는 유해물질, 분진, 소음 등 유해인자가 노출되는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회사와 근로자는 아래 각 호와 같이 필요시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① 일반검진 또는 특수검진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나 요관찰자로 판정받은 근로자
 - ② 최근 1년간의 작업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
 - ③ 문진이나 병력·진찰 등의 소견에서 해당 유해인자와 관련된 질병의 소견이 의심되는 근로자
 - ④ 기타 2차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

제 4 장 | 사고 및 위험성 평가 |

제 9 조 [사고 발생시 대책]

1. 사고 발생 시 조치
 - ① 재해자 구조
 - 사고 발생시 기계장치 정지 및 재해자 구조를 최우선적으로 조치하고, 119신고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에 보고
 - 사고 발견자는 응급조치 실시와 동시에 회사에 사고 발생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지방고용노동청 보고
 - 회사는 해당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사고 조사
 - ① 회사는 동종 및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② 사고 조사는 사고현장이 훼손(정리)되기 전에 개인의 잘못보다는 구조적 객관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수시위험성평가, 위해성평가 등이 신속히 수행되어야 한다.
 - ③ 사고 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필요시 유관한 관리감독자 또는 근로자 대표를 참가하도록 한다.

3.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① 회사는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가. 사업장의 사고현장 주변의 유해요인을 분석하고 작업환경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한다
 - 나. 사고사실을 공유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 ② 회사는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0조 [위험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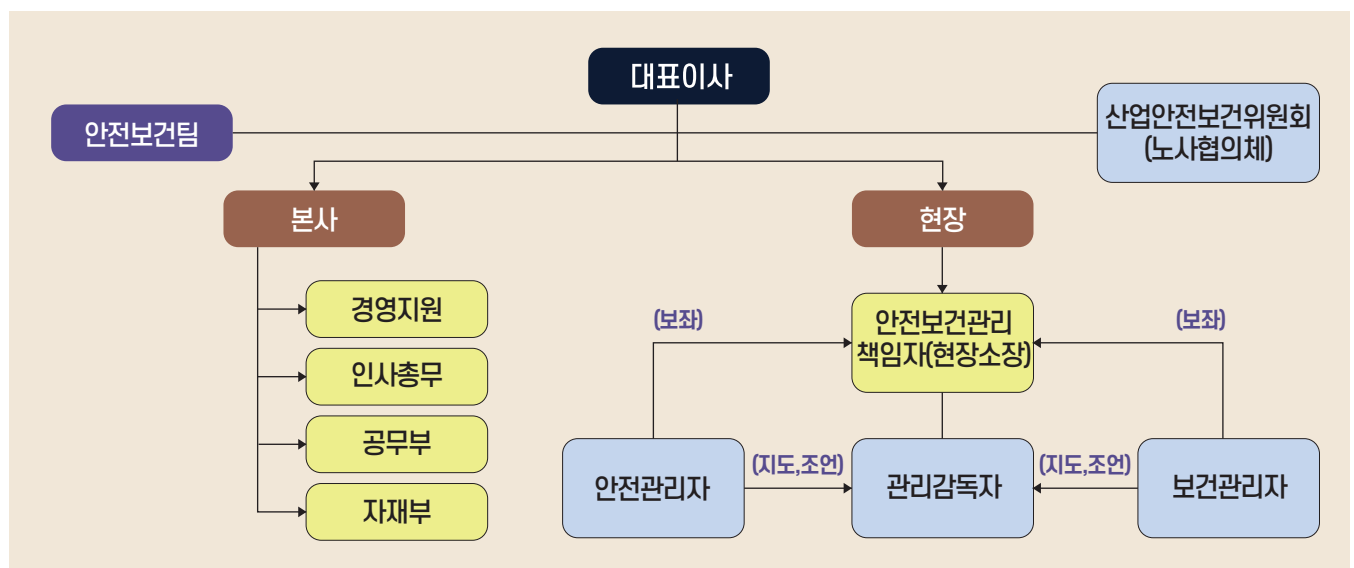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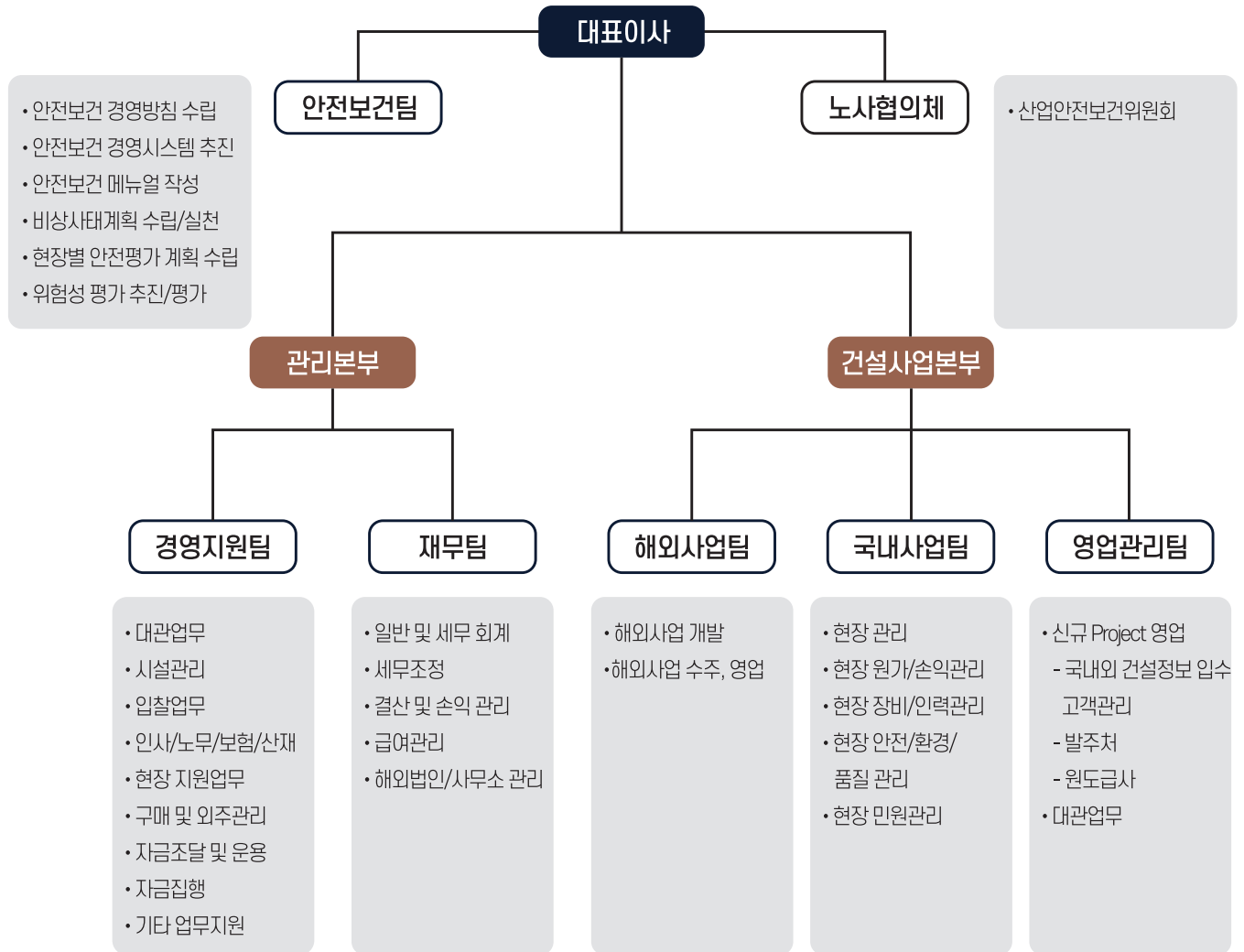
1. 회사는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2. 회사는 필요시 전문가(기관)에게 '위험성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3. 회사는 '위험성평가'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 하여 부상 ·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4. 회사에서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6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조직도



■ 업무분장표

직무	업무분장	비고
최고경영자	가.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제정 및 승인 나. 안전보건경영목표 및 세부추진계획의 승인 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행여부 확인 라. 시스템의 실행을 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제공 마. 안전보건경영매뉴얼 승인 바. 경영자 검토 및 승인 사. 비상사태에 대한 대책 수립 승인	
본사: 안전보건관리 임원	가. 회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원청회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립, 실행 및 유지되도록 보장 나. 회사의 안전보건경영 실적에 대한 결과내용 검토 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주기적 점검과 교육 라. 위험성 평가 이행에 관련된 사항 확인 마. 비상사태에 대한 대책 수립 검토	
본사: 안전관리 담당	가. 안전보건방침/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배포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과 주기적 점검으로 보완·개정 다. 현장안전보건교육, 점검 및 지원 업무 라. 현장목표의 검토 및 이행여부 확인 마. 안전보건경영 문서관리 절차 수립 및 유지관리 바. 안전보건관련 전자자료 관리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계획 및 현장사용 검토 아. 위험성평가 관련사항 계획 수립 자. 현장별 위험성평가 이행여부 확인 및 관련문서 취합 차. 안전보건 정보를 수집/배포 카. 현장별 평가자료 작성	
본사: 각 부서팀장	가. 현장지원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실행 및 운영관리에 관한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 나. 경영지원팀은 상·하반기 성과측정 및 내부심사 평가결과에 대한 포상 지원 다. 대표이사님은 상·하반기 우수 직원에 대해 인사고과에 반영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현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영관리 총괄 및 업무분장을 통한 책임과 권한의 부분적 위임 나. 안전보건방침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 및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 다. 현장의 위험성 평가 실시 주관 라. 현장매뉴얼 수립·유지관리 마. 현장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수립 및 실시 바. 안전보건시설의 운영 및 기록관리 사. 현장 안전보건관련 업무를 위한 적절한 자원의 확보 및 배치 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장: 안전관리자	가. 위험성 평가 관련문서 작성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의 수립·집행 및 기록의 유지·관리 다. 현장 안전보건관리 활동 및 관련문서 기록의 유지·관리 라. 기타안전보건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계획수립 및 시행 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안전관리자의 업무	
현장: 관리감독자	가. 당해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나. 근로자 보호구 착용 상태 및 사용에 관한 지도/점검 다. 현장 안전관리(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라. 공종별 위험성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마. 근로자에 대한 안전한 작업의 지도/감독 바. 현장 내 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응급처치 사.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관리감독자의 업무	